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3, 2009. 8, pp. 29-54

#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 결정요인*

송 창 국
(두레교회 목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교단은급제도를 둔 개신교 주요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기감의 4개 교단)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4개 교단 목회자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들이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회자들의 사적 경제적 노후 준비활동 수준은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교단은급제도는 의무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교단(예장통합, 기장, 기감)은 7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한 예장합동측은 11.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넷째, 국민연금은 기장측(61.8%)을 제외한 나머지 교단은 미가입자(53.3%)가 더 많았고, 미가입 사유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다. 넷째,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과 총수입, 교회자립 여부, 교회자체적립 여부,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여부이고, 그 중 총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4개 교단 중 예장합동측을 기준으로 기장측 목회자가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수입이 많으면 교단은급제도와 국민연금 및 사적 방식의 대책까지 모두 준비하지만, 수입이 적은 목회자들은 사적 준비와 공적 준비 모두 못하고 있으므로 교단내 목회자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교단 은급제도 의무가입을 실시하는 교단에서도 미가입자가 상당하므로 은급(연금)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요 단어: 목회자, 경제적 노후 준비, 노후준비 의식, 교단은급제도, 국민연금제도, 사적 준비, 기감측(KMC), 기장측(PROK), 예장통합측(PCK), 예장합동측(GAPCK)

* 이 논문은 박사학위논문(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결정요인 연구, 2008.12 평택대)중에 독립변인을 추가(교회자체적립), 제거(신학사상)하고 교회적요인을 별도로 하여 수정하였다.

# 1. 서 론

최근들어 수명증가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 인구비율이 7.4%로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이후 2018년에는 14.3%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07). 문제는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서구 선진국의 경우 40-115년이 걸렸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고령화와 수명 증가로 경제적 준비를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는 교회와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다.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1]가 2007년 추정한 바에 의하면 은퇴목회자가 전국에 최소 3,000명 이상인데, 그 중 70%의 목회자는 월소득 7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은퇴목회자의 1/3은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크리스챤투데이, 2007. 4. 12일자).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은퇴목사 중 총회연금 미가입자 359명(평균 연령 77.2세)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조사한 결과, 목회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72만 6000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층은 각각 4%, 9%로 집계됐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극빈층' 은퇴목사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충청투데이, 2008. 10. 13일자).

이런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방식은 크게 전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제도와, 소속목회자의 은퇴를 대비하여 교단이 만든 교단 은급제도, 개교회의 은급비 지급 등이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내거주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은퇴나 사고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목회자들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정화면, 2004) 내지 임의가입자로 분류되어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2]. 이는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교단 은급제도가입에 따른 이중부담 또는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가입에 소극적이다. 다만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최근 중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소득세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목회자들도 있다(시사저널, 2006. 2. 23일자). 또한 주요 교단에서는 일평생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소속 목회자들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은급비를 납부하면 정년을 맞이할 때나 불의의 사고시 연금을 지급받도록 은퇴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목회자은급(연금)제도[3]을 만들어 가입을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1)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는 1996년 개신교내의 19개교단의 은퇴·원로목사 400여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2) 이용하(2003)가 성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선 응답자의 58.2%가 국민연금 미가입자였고, 가입자 중에서도 17.2%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 상태였다.

3) 한국 개신교 100여개 교단중 은급제도를 설치한 교단은 기장측, 기감측, 구세군, 기성측, 루터교, 예장통합측, 예장합동측, 예장대신측, 예장고신측 등 10여개 교단에 불과하고(기독교신문, 2008.10.26일자), 기타 교단들은 은급제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미가입자이거나 은급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했을 때,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합동측 헌법, 2000),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는 것도 쉽지 않고, 20년 이상 목회했다 해도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결의하고 원로목사로 추대하기가 어렵고,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해도 실제 생활비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김성훈, 2000). 게다가 일부 대형교회의 목회자는 많은 사례금을 받고 있어(한겨레신문, 2003. 1. 9; 오마이 뉴스, 2005. 1. 21) 사적으로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농어촌교회나 도시 미자립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동아일보, 2003.1.25)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처럼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 현실은 어려운 가운데 교단마다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기독신문. 2008.5.20일자).

한편,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1980년대 초부터 미국(McPheson and Guppy, 1979; Beck, 1984; Richardson and Kilty, 1989; Hodges, 2004)과 국내(임장순, 1990; 박지선, 2004; 윤경선, 2004; 박창제, 2008)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성직자 대상으로는 손상국(2002), 배현정(2002), 이용하(2003), 전봉화(2004) 등과, 목회자 대상으로 임훈식(1985), 박종일(1998), 김성훈(2000), 권균한(2001), 김민우(2005), 서정창(2005), 이규현(2007) 등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목회자와 성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노후 준비 실태를 교단별(종단별)로 조사한 것이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결정요인을 살펴보되, 특히 정부의 공적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교단이 교단 목회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든 교단은급(연금)제도, 교회가 은급비를 자체 적립하는 방식 등의 요소와, 목회자의 의식적 요소인 노후 준비의식을 중심으로 목회자의 사적 경제적 노후 준비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에는 크게 공적인 수단과 사적이 수단이 있는데, 공적인 수단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포함) 등 공적 이전수단이 있고, 사적 수단에는 근로를 통한 소득이나 저축, 부동산, 보험 등의 사적 소득과, 자녀나 친척 등 비공식적 지지망에서의 사적 이전소득 등이 있다(이기성, 2005).

이중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여 공적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은 200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부부 중 19%만이 수급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율도 8.1%에 불과하여 공적 수단에 의한 수급율은 총 27.1%에 지나지 않는다(통계청, 2007). 경로연금 대상자까지 포함해도 2006년

현재 32.4%에 지나지 않고, 금액도 적어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박창제 2008). 게다가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구미에서도 국민연금으로 인한 정부재정 부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노후보장에 대한 공적 연금의 비중을 감소시켜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금고갈의 우려감을 가지는 국민연금과 정부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특수직역연금 등의 수급 비중을 감소시켜나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을 보완해온 것은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적 복지와 노인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우리나라 노인의 상당수가 가족의 이전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손병돈, 2005), OECD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노인인구, 특히 65-74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04: 박창제, 2008 재인용).

그러나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계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강해짐으로 가족의 사적 이전이나 부양 같은 비공식적 복지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더구나 현 사회가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를 노인이 따라가기 어렵고 재취업 기회를 갖기 힘들어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목회자들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안은 국가차원의 공적 소득보장수단인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 포함), 교단차원의 은급(연금)제도, 개교회의 은급 적립, 그리고 개인차원의 보험가입이나 저축 등의 노력이 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으로 정부가 전 국민을 위해 만든 공적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경제적 보장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기능은 부족하지만, 저축과 같은 자기보장과, 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직장보장과 함께 노후 준비를 위한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분류되어 가입한 목회자도 있으나 미가입한 이들이 많다. 또한 교단 은급제도는 교단별로 운영방식이 달라서 은퇴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모든 회원권을 제한하는 강제가입과 본인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으로 나누어진다. 기장과 기감측은 교단은급 제도에 미가입할 시 회원권을 보류하고 총대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기에 80%이상의 높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장(통합)측은 목사안수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수후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이동할 시에는 강제규정이 없어 가입율은 좀 더 낮으며, 예장(합동)측은 임의가입방식을 취하기에 개인 가입은 10%대에 불과하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은퇴를 대비하여 은급비를 적립하였다가 은퇴후에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실제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회에서나 가능할 일이다[4].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노후준비 노력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평생 목회에만 전념하면서 살아왔기에 성직자라는 신분과 자존심 때문에 새로이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일반성도들이나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더 어렵다(박종일, 1990). 그러기에 은퇴후에 너무 가난하여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목회자들의 경제적 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전통적 관념인 무소유를 미덕으로 여겨왔고, 저금통을 갖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 노후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최근에 와서 목회자들이 갑작스런 사망이나 질병시 가족은 사택에서 나오고 빈곤층으로 전

4) 예장(통합)측의 전국 은퇴목사 395명의 목사중에 원로목사로 추대된 경우는 83명으로 약 21%에 지나지 않았다(김성훈, 2000).

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목회자들도 미리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김청수, 2002:122)이 나오면서 목회자들을 위한 보험도 신설되고 개인재산을 취득하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목회자도 다른 직업인처럼 어떤 형태로든 은퇴와 노후를 맞이하므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선행연구는 몇 개가 있다.

임훈식(1985)은 예장(통합)측 교역자를 대상으로 교역자의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이가 많고, 교단의 은급제도가 미비하며, 사례비 격차의 원인으로 개교회주의를 꼽았다.

박종일(1998)의 연구에서는 은퇴목회자들의 당면문제는 경제문제가 가장 컸고, 은퇴목회자를 위한 전담기구 개설과 복지비 분담금 개설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민우(2005)는 감리교 목회자 대상 연구에서 은퇴후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이며,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가 과반수를 넘었고, 은급제도의 주체는 교회와 교단이 대다수였고, 현행은급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서정창(2005)은 침례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노후복지의식 조사에서 노후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소득문제였고, 은퇴목회자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희망하였고, 노후생활비 제공을 총회의 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이규현(2007)은 예장고신측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와 은급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노후 걱정 문제는 경제문제와 건강문제이고, 응답자의 47.6%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었고,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단 은급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중대형교회들의 미자립 교회 지원금의 일부를 노후은급비로 전환하여 지원할 것과, 은급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킬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타종교에서 배현정(2002)의 원불교 교역자 노후복지 대책, 이병태(1988)의 불교승려의 노후복지 연구, 불교승려 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전봉화, 2004) 등이 있으나 대부분은 종단내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손상국(2002)의 불교조계종 승려의 노후복지 연구에선 현재 건강 인식, 노후 주거공간 확보여부, 생활비 필요성 여부 등을 독립 변수로, 노후문제 염려, 노후보장의 필요성, 노후보장 서비스의 필요성을 종속 변수로 하여 카이제곱 검증과 회귀분석을 한 결과 노후 염려 등이 유의미하였다.

이처럼 목회자를 비롯한 성직자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교단 혹은 종단내 노후 준비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이고,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는 연구는 아니었다. 경제적 노후 준비와 관련된 변인을 찾는 연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배계희(1988), 이지은(1999), 윤경선(2004),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등은 40-55세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측면의 노후 준비 정도를 점수화하고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변수를 밝히고자 하였고, 김성숙・박운아(1992), 신하연(1997), 박창제(2008) 등은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 준비행동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를 요약해보면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은퇴계획연령, 월평균소득, 가계순자산, 자녀교육비 등과, 심리적 변인으로 건강만족도, 자녀에의 부양기대감, 노후 준비의식 등과, 제도적인 요인으로는 공적연금 접근가능성 등이 있었다.

하지만 목회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 준비의 변인을 찾는 연구가 전무하기에 본 연구에선 국민연금 외에 노후준비 신학의식, 교단 은급제도, 교회자체적립 등을 포함시켜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 3)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인구 사회학적 요인

① 연령

최근 연구(Montalto and Geistfeld, 1996; 김성숙·박운아, 1992; 최성재, 1992; 이행숙, 1996; 이지은, 1999; 강유진, 2005; 조추용 외, 2009)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 및 노후 자립의식의 확산, 욕구수준의 다양화와 함께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창제(2008)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사적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젊을수록 은퇴를 맞이하는 기간이 오래 남아있어 좀 더 체계적으로 세우고,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고 유교적 전통의식이 강해 자립하려는 생각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전 등(1992)이나 계선자(199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령이 적을수록 준비하려는 의식은 있지만 자녀교육과 자녀 결혼 등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준비는 늦게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보면 연령과 노후 준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② 학력

많은 선행연구(Beck, 1984; McPherson and Kilty, 1989; 계선자, 1989; 이연숙, 1998; 김인숙, 2004; 박창제, 2008)는 학력과 노후 준비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정도는 높고(서전·박혜인 1992; 김인숙, 2004),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임장순, 1990). Mckenna(1985)의 연구에서는 학력은 은퇴를 대비한 재정계획의 목표설정과 실제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박창제(2008)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 준비 가능성과 사적 경제적 노후 준비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될 가능성이 많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으며, 김성숙·박운아(1992)의 연구에서도 학력은 주관적 노후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학력이 노후계획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및 정보수집, 합리적 의사결정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목회자의 학력도 경제적 노후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③ 자녀수

배계희(1988)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은 노후 준비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 자녀에게 지출할 자금마련을 가장 시급한 요구로 본다. 따라서 자녀수가 많으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한 재정목표수준을 낮춘다. 또한 Mckenna(1985)의 연구에서는 18세 이하의 의존적인 자녀수가 없을수록 노후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와 관련된 재정적 요구가 감소하므로 여유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녀수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와 연관이 있으므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예상된다.

④ 총수입(월평균소득)

선행연구들(배계희, 1988; 계선자, 1989; 김인숙, 2004; 신하연·여정성, 1997; 이지은, 1999; 윤경선, 2004; 강유진, 2005; Mckenna, 1985; Kilty & Bihling, 1986)를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은 노후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숙·박운아(1992)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노후 준비 월평균 저축액도 많았고, 주관적 노후 정도도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잉여자금으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비하기 쉬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지은, 1999). 따라서 총수입은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어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⑤ 자녀교육비

자녀교육비는 노후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김인숙(2004)의 연구에 의하면, 첫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 준비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 자녀교육비 부담이 노후대비를 방해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선희(1989)의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의 77.5%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전체의 15.5%는 부업활동, 은행대출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공교육비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가정의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의 교육비는 연 1,000만원에 도달해 학생들이 등록금투쟁을 할 만큼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목회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마쳐야 하기에 학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을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 노후 준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2) 교회적 요인**

① 청장년교인수

목회자가 시무하는 청장년 교인수도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교인이 불어나면 목회자는 즐겁고, 교회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교인수가 줄어가면 목회자는 고민한다(이상규, 2004). 한편 교인수가 늘어나면 사례비의 증가도 있을 것이고, 이에 경제적 노후 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져서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② 교회 자립여부

교회의 자립여부도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회자립이란 교회가 재정적으로 외부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재정은 교회운영(예배 및 친교)비, 목회자 사례금, 장소관련 비용(임대료 등), 전도와 선교비, 부서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수입은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미자립 교회는 교인수가 적고 교회운영을 위한 헌금이 모자라 목회자 사례비 지급, 교회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로 외부의 후원(지원)을 받는다(기독교보, 2008.7.23). 교회가 자립하면 목회자의 노후를 위한 비용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되어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③ 교회자체적립

목회자의 퇴직을 위한 교회 자체 적립여부도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회자체적립이란 목회자의 은퇴를 대비하여 사례비의 일정금액을 매년 혹은 매달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회가 자체적립을 하려면 교회의 동의와 재정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재정능력이 미약한 교회는 자체적립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회자체 적립하면 교회가 준비해주므로 사적으로 노후준비를 등한히 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교회가 준비하더라도 별도로 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교회자체적립 여부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 (3) 교단적 요인

① 노후준비 의식

박지선(2004)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 준비의식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행숙(1996)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 준비의식은 노후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후자금 마련을 하는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노후 준비행동은 노후 준비의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노후 준비를 부정적으로 듯한 말씀하는 성경구절(마 6:26-34, 마 10:9-10)과 선배목사들의 가르침과 생활을 따라 전통적으로 무소유와 청빈을 미덕으로 여기고, 통장을 갖거나 보험에 드는 것, 노후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규현, 2007), 경제적 노후 준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기독교신문, 2008.10.26일자), 노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여(김성훈, 2000) 노후 준비에 소극적이었다. 그리하여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노후와 가족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보험이나 저축, 개인 이름으로 된 집도 마련하지 않고 과도한 헌금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목회사역과 교회성장을 위해 헌신하여 왔다(김청수, 2002). 그러나 동료목회자들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사고로 인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모습과 사회의 흐름을 따라 정년 은퇴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김청수, 2002, 손병덕, 2008)도 있으므로, 노후준비 신학의식은 노후준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② 교단 은급제도 가입여부

교단 은급제도는 평생동안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목회자들을 위해 교단이 은퇴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교회나 목회자가 은급제도에 가입하고 은급비를 불입하면 정년을 맞이할 때나 불의의 사고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운영방식은 의무가입방식과 임의가입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기감과 기장측은 은퇴부담금을 미납할시 모든 회원권을 제한하는 의무가입

방식을, 예장합동은 본인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군소교단으로 가면 교단차원의 은급제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단 은급제도에 가입하면 목회자들은 노후 준비를 했으니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적인 준비를 등한히 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단 은급제도에 가입은 하지만 이것으론 충분하지 않고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비용을 고민하여 사적인 준비를 더 열심히 할 가능성도 있다. 목회자의 교단 은급제도 가입 여부는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 (4) 제도적 변인

①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법에 의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주는 공적 제도중의 하나로서, 국민연금 그 자체만으로 노후의 경제적 보장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축과 같은 자기보장, 기업의 퇴직금과 같은 직장보장과 함께 노후 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Mckenna(1985)의 연구에 의하면, 연금에 접근가능성은 은퇴계획, 특히 정보수집과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기원(2001)의 연구에서는 주된 노후 준비수단으로서 공적연금의 선택은 부수적으로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이나 적금을 노후 준비수단으로 삼는 것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유의미하게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윤경선(2004)의 중년층 노동자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적 연금 가입은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공적 연금에 가입할수록 노후를 많이 생각하고, 노후에 공적연금 외에 어느 정도 돈이 더 필요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사적 경제적 노후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Mckenna, 1985). 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했으니, 이제는 노후 준비를 다했다는 생각으로 사적 경제적 준비를 등한히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특히 목회자들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임의가입 대상으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목회자도 많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경제적 준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변수로 설정하였다.

## 3.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신학적 성향이 다르면서도 교단 은급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주요교단인 예장합동측(GAPCK), 예장통합측(PCK), 기장측(PROK), 기감측(KMC) 소속 전체목회자 중 각 교단이 발행한 교단주소록(주소와 전화번호, 목회자 등이 없는 교회와 목회자와 해외선교사와 은퇴목회자를 제외)을 모집단으로 하여 각각 교단별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 번호를 부여하고 난후 400명씩

1,600명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 돌아온 합동측 139부, 기장 110부, 통합측 102부, 기감측 101부 등 452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였다.

## 2) 조사도구

### (1) 종속 변인- 경제적 노후 준비 측정도구

이 척도는 이행숙(1996), 신하연(1997), 김문을(2002), 김영채(2007) 등의 연구에서 경제적 준비만을 뽑아내서 그 중에서도 사적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준비활동 문항으로만 구성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 활동에는 공적 수단에 의한 국민연금이나 교단 은급제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교단 은급제도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종속 변인인 사적 준비와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기에 저축, 개인연금, 보험, 부동산 등 사적인 준비 활동으로 한정하였다.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1차적으로 사회복지학 교수와 목회자들과 검토하였으며, 직교회전(varimax)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1〉와 같이 1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분산비는 55.755%의 설명력을 보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01이었다.

〈표 1〉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경제적 노후 준비 | 성분 | 신뢰도 |
|---|---|---|
| 3. 교단 은급제도나 국민연금이 부족할 것같아 개인연금 상품에도 가입하고 있다. | .796 | .801 |
| 5. 노후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788 | |
| 2.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 보험 외에도 매달 저축을 한다. | .773 | |
| 1.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 .750 | |
| 4. 노후생활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 .613 | |
| 고유치(eigenvalue)<br>설명변량(%)<br>누적설명변량(%) | 2.788<br>55.755<br>55.755 | |

### (2) 독립 변인

①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는 연령, 학력, 자녀수, 월소득, 자녀교육비, 소속교단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목회자의 출생연도를 기입하고 난 뒤, 한국 나이로 변환하였다. 학력은 대졸이하는 1, 대학원졸업은 2, 박사과정이상은 3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자녀수는 부양의무를 가진 자녀총수를 기입하게 하였고, 총수입은 월수입 총액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녀교육비는 한 달 동안의 교육비를 기입하

도록 하였다. 소속교단은 예장합동은 1, 예장통합은 2, 기장은 3, 기감은 4로 선택기입하게 하였고, 합동측을 기준으로 더미처리를 하였다.

② 교회적 요인

교인수는 청장년교인수를 연속변수로 기입하였고, 교회자립유무는 자립은 1로, 미자립은 2로 선택하게 한 후, 자립은 1, 미자립은 0으로 더미처리하였으며, 교회자체적립은 적립은 1, 미적립은 2로 선택한 뒤, 적립은 1, 미적립은 0으로 더미처리를 하였다.

③ 노후준비 신학의식

이 척도는 노후 준비를 바라보는 신학적 의식으로 직접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노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 '(3)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5)노후를 위해 적금이나 예금통장을 갖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등의 전통적인 입장을 말하는 문항 3문항과, '(1)노후는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노후를 위해 보험이나 적금에 가입할 수 도 있다' 등의 변화된 입장을 말하는 2문항 등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않다는 1점, 그렇지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 척도로 하되, (2), (3), (5)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목회자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변화된 입장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노후 준비를 미리 할 필요없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17로 나타났고, 척도의 타당성을 위해 목회자와 신학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직교회전(varimax)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 요인에 분산비는 48.872%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2〉 노후준비 신학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 노후준비 신학의식 | 요인1 | 신뢰도 |
|---|---|---|
| 3. 목회자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 **.784** | .717 |
| 4. 목회자가 노후를 위해 보험이나 적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 **.720** | |
| 5. 목회자가 노후를 위해 적금이나 예금통장을 갖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 **.675** | |
| 2. 목회자의 노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 | **.657** | |
| 1. 노후 준비는 젊었을 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51** | |
| 고유치(eigenvalue) | **2.444** | |
| 설명변량(%) | **48.872** | |
| 누적설명변량(%) | **48.872** | |

④ 교단 은급제도 및 국민연금 가입 변인

노후를 대비한 준비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는 교단 은급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이다. 교회가 목회자의 은퇴를 대비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과 교단이 소속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은급제도 가입여부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적 시책으로 마련한 공적 수단인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포함)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각각 예를 1로, 아니요를 2로 선택하게 한 뒤, 더미변수를

만들기 위해 예를 1로, 아니요를 0으로 변환하였다.

###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후준비 관련 사항에 대해 빈도분석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일반적 특성

#### (1)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자녀수, 총수입, 자녀교육비, 직위, 교회 자립여부, 장년교인수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은 50대 181명(40.0%), 40대 141명(31.2%), 60대이상 88명(19.5%), 30대이하 36명(8.0%)순이었고, 학력은 대학원졸업이 303명(67.0%), 박사과정이상이 113명(25.0%), 대졸이하 30명(6.6%)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자녀는 2명(55.5%)와 3명 102명(22.6%)로 많았고, 총수입은 250만원이하가 283명(62.6%)이고 251만원이상 152명(33.7%)에 불과했다. 자녀교육비는 50만원이하가 232명(52.0%)이고 51만원이상도 203명(44.9%)이나 되었다. 교회자립여부는 합동은 미자립 교회가 많았고, 통합, 기장, 기감은 자립교회가 많았다. 교인수는 50명이하가 229명(50.6%), 101명이상은 125명(27.7%)였다.

〈표 3〉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명, %)

| 특성 | 구분 | 예장합동 | 예장통합 | 기장 | 기감 | 전체 |
|---|---|---|---|---|---|---|
| 연령 | 39세이하 | 9 (6.5) | 12(11.8) | 5(4.5) | 10(9.9) | 36(8.0) |
| | 40-49세 | 51 (36.7) | 36(35.3) | 29(26.4) | 25(24.8) | 141(31.2) |
| | 50-59세 | 57(41.0) | 36(35.3) | 49(44.5) | 39(38.6) | 181(40.0) |
| | 60세이상 | 22(15.8) | 16(15.7) | 25(22.7) | 25(24.8) | 88(19.5) |
| | 무응답 | 0(0) | 2(2.0) | 2(1.8) | 2(2.0) | 6(1.3) |
| 학력 | 대졸이하 | 11(7.9) | 3(2.9) | 11(10.0) | 5(5.0) | 30(6.7) |
| | 대학원졸업 | 109(78.4) | 66(64.7) | 67(60.9) | 61(60.4) | 303(67.0) |
| | 박사과정이상 | 19(13.7) | 30(29.4) | 30(27.3) | 34(33.7) | 113(25.0) |
| | 무응답 | 0(0) | 3(2.9) | 2(1.8) | 1(1.0) | 6(1.3) |
| 자녀수 | 1명이하 | 19(13.7) | 15(14.7) | 16(14.5) | 9(8.9) | 59(13.1) |
| | 2명 | 67(48.2) | 59(57.8) | 62(56.4) | 63(62.4) | 251(55.5) |
| | 3명 | 40(28.8) | 16(15.7) | 24(21.8) | 22(21.8) | 102(22.6) |
| | 4명이상 | 12(8.6) | 8(7.8) | 4(3.6) | 4(4.0) | 28(6.2) |
| | 무응답 | 1(0.7) | 4(3.9) | 4(3.6) | 3(3.0) | 12(2.7) |
| 총수입 | 150만원이하 | 62(44.6) | 21(20.6) | 24(21.8) | 25(25.7) | 133(29.4) |
| | 151-250만원 | 42(30.2) | 34(33.3) | 39(35.5) | 35(34.7) | 150(33.2) |
| | 251-350만원 | 14(10.1) | 24(23.5) | 23(20.9) | 18(17.8) | 79(17.5) |
| | 351만원이상 | 17(12.2) | 16(15.7) | 20(18.2) | 20(20.0) | 73(16.2) |
| | 무응답 | 4(2.9) | 7(6.9) | 4(3.6) | 2(2.0) | 17(3.8) |
| 자녀 교육비 | 0원 | 31(22.3) | 16(15.7) | 34(30.9) | 27(26.7) | 108(23.9) |
| | 1-50만원 | 45(32.4) | 30(29.4) | 25(22.7) | 27(26.7) | 127(28.1) |
| | 51-100만원 | 42(30.2) | 24(23.5) | 28(25.5) | 21(20.8) | 115(25.4) |
| | 101만원이상 | 20(14.4) | 27(26.5) | 19(17.3) | 22(21.8) | 88(19.5) |
| | 무응답 | 1(0.7) | 5(4.9) | 4(3.6) | 4(4.0) | 14(3.1) |
| 교회자립여부 | 자립교회 | 59(42.4) | 65(63.7) | 76(69.1) | 71(70.3) | 271(60.0) |
| | 미자립 교회 | 79(56.8) | 30(29.4) | 31(28.2) | 30(29.7) | 170(37.6) |
| | 무응답 | 1(0.7) | 7(6.9) | 3(2.7) | 0(0) | 11(2.4) |
| 교인수 | 20명이하 | 46(33.1) | 17(16.7) | 16(14.5) | 35(34.7) | 114(25.2) |
| | 21-50명 | 51(36.7) | 17(16.7) | 26(23.6) | 21(20.8) | 115(25.4) |
| | 51-100명 | 22(15.8) | 16(15.7) | 23(20.9) | 15(14.9) | 76(16.8) |
| | 101-200명 | 11(7.9) | 9(8.8) | 23(20.9) | 13(12.9) | 56(12.4) |
| | 201명이상 | 5(3.6) | 33(32.4) | 16(14.5) | 15(14.9) | 69(15.3) |
| | 무응답 | 4(2.9) | 10(9.8) | 6(5.5) | 2(2.0) | 22(4.9) |

### (2) 노후 준비 관련 빈도분석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교단 은급제도, 국민연금 등의 가입여부 및 비용부담을 빈도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국민연금은 미가입이 241명(53.3%)이고 가입이 209명(46.2%)으로 미가입이 많았고, 가입자의 경우 가입형태는 대부분 지역가입(172명, 82.3%)이었고, 국민연금 비용부담은 전액 개인부담이 155명(74.9%)였고, 전액 교회부담은 35명(16.9%)에 불과했고, 미가입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58.8%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교단은급제도에 관해 묻는 질문에서 가입이 280명(61.9%), 미가입이 172명(38.1%)로 가입자가 많았으나, 합동측의 가입자는 11.5%에 불과했다. 가입률은 기감, 기장, 통합, 합동순이었다. 은급비 부담방식은 합동측과 기감측은 전액교회부담이 50%을 넘었으나, 통합과 기장은 개인과 교회 절반씩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통합측은 전액 본인부담도 19.2%였다. 은급비 교회자체적립 여부는 미적립이 347명으로 76.6%, 적립이 105명으로 23.2%로 미적립이 많았다.

〈표 4〉 노후 준비 관련 빈도분석

(명, %)

| 특성 | 구분 | 합동 | 통합 | 기장 | 기감 | 전체(%) |
|---|---|---|---|---|---|---|
| 교단은급 가입여부 | 가입 | 16(11.5) | 78(76.5) | 93(84.5) | 93(92.1) | 280(61.9) |
| | 미가입 | 123(88.5) | 24(23.5) | 17(15.5) | 8(7.9) | 172(38.1) |
| 은급비 부담방식 | 전액교회부담 | 10(62.5) | 28(35.9) | 30(32.6) | 46(50.0) | 114(40.9) |
| | 개인교회절반 | 2(12.5) | 34(43.6) | 48(52.2) | 37(39.2) | 121(43.4) |
| | 전액본인부담 | 4(25.0) | 15(19.2) | 6(6.5) | 8(8.6) | 33(11.8) |
| | 기타 | 0(0) | 1(1.3) | 8(8.7) | 2(2.2) | 11(3.9) |
| | 합계 | 16(100) | 78(100.0) | 92(100) | 92(100) | 278(100) |
| 은급비 교회자체 적립 | 자체적립 | 21(15.1) | 25(24.5) | 32(29.1) | 27(26.7) | 105(23.2) |
| | 미적립 | 118(84.9) | 76(74.5) | 76(56.9) | 74(73.3) | 346(76.6) |
| | 무응답 | 0(0) | 1(1.0) | 0(0) | 0(0) | 1(0.2) |
| 국민연금 가입여부 | 가입 | 50(36.0) | 44(43.1) | 68(61.8) | 47(46.5) | 209(46.2) |
| | 미가입 | 89(64.0) | 58(56.9) | 40(36.4) | 54(53.5) | 241(53.3) |
| | 무응답 | 0(0) | 0(0) | 2(1.8) | 0(0) | 2(0.4) |
| 국민연금 가입형태 | 직장가입 | 6(12.0) | 7(15.9) | 13(19.1) | 4(8.5) | 30(14.4) |
| | 지역가입 | 40(80.0) | 37(84.1) | 53(77.9) | 42(89.4) | 172(82.3) |
| | 기타 | 4(8.0) | 0(0) | 2(2.9) | 1(2.1) | 7(1.6) |
| | 합계 | 50(100) | 44(100) | 68(100) | 47(100) | 209(100) |
| 국민연금 비용부담 | 교회전액 | 16(32.0) | 3(6.8) | 7(10.4) | 9(19.6) | 35(16.9) |
| | 개인교회절반 | 4(8.0) | 4(9.1) | 2(3.0) | 0(0) | 10(4.8) |
| | 전액본인 | 28(56.0) | 36(81.8) | 54(80.6) | 37(80.4) | 155(74.9) |
| | 기타 | 2(4.0) | 1(2.3) | 4(6.0) | 0(0) | 7(3.4) |
| 국민연금 미가입이유 | 경제적 어려움 | 62(82.7) | 22(42.3) | 13(41.9) | 23(50.0) | 120(58.8) |
| | 이중가입 | 1(0.3) | 20(38.5) | 10(32.3) | 6(13.0) | 37(18.1) |
| | 성직자 | 3(4.0) | 3(5.8) | 0(0) | 7(15.2) | 13(6.4) |
| | 신뢰성 결여 | 3(4.0) | 2(3.8) | 4(12.9) | 3(6.5) | 12(5.9) |
| | 기타 | 6(8.0) | 5(9.6) | 4(12.9) | 7(15.2) | 22(10.8) |

### (3) 단순기술 통계치

본문에서는 교단별로 경제적 준비수준과 독립 변수로 사용한, 연령, 학력, 총수입, 자녀수, 소속교단, 교회자립여부, 자녀교육비, 교회자체적립여부, 교단은급 제도가입여부, 노후 준비 신학의식, 국민연금 가입여부변수의 단순기술통계량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았다. 전체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의 평균값은 최소 1점, 최대 5점사이 2.15점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최대값이

4.80점, 최소값이 1점으로 노후 준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중에는 기장(2.40), 예장통합(2.26), 기감(2.15), 예장합동(1.86)순이었고, 4개 교단 모두 평균 3점이하로 사적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기장측이 가장 높았고, 합동측이 가장 낮았다.

목회자의 평균 연령은 51.07세인데, 예장합동은 51세, 예장통합은 49세, 기장은 53세, 기감은 52세였다. 학력은 기감(2.32), 예장통합(2.28), 기장(2.18), 예장합동(2.03)으로 비슷하여 대학원졸업자들이 많았으며, 월수입은 전체평균이 247만원인데, 편차는 154만원으로 소득의 편차가 컸고, 최저소득은 0원에서 최고소득은 1,500만원으로 빈부격차가 심했다. 교단별로는 예장통합측이 283만원, 기장측이 257만원, 기감측이 245만원, 예장합동측이 216만원으로 나타났고, 총수입의 편차는 기장(115.49), 기감(126.49), 예장합동(158.36), 예장통합(191.73)으로 합동측은 사례비도 적고 편차는 심한 편이었고, 통합측은 상대적으로 수입도 많은 반면 편차도 매우 심하였다. 반면 기장측과 감리교단은 총수입은 평균보다 많은데 비해 편차는 적어 상대적으로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녀교육비는 전체 평균 71만원 정도이고 표준편차도 75만원였는데, 통합측이 평균보다 9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기감측이 74만원은 평균을 약간 넘었으나, 기장측과 합동측은 각각 65만원, 62만원으로 평균보다 적었다. 청장년 교인수는 전교단 평균이 159명이었는데, 편차는 361명으로 교인수의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별로는 예장통합측이 367명, 기감측이 136명, 기장측이 131명, 합동측이 6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합측(631명)과 기감측(328명)은 교인수의 편차가 심하였고, 기장측(136명)과 합동측(121명)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었다. 교회자립여부는 .61로서 자립교회가 많았으며, 유효 440명중 271명(60.0%)이 자립 교회였으나, 미자립 교회도 170명(37.6%)이나 되었다. 교단별로는 합동측을 제외한 3개 교단이 자립교회가 70%를 넘었지만, 합동측은 미자립 교회가 많았다.

교회별 은급비 적립여부는 23%가 적립하고 있어 미적립하는 교회가 많았으며, 교단별로는 기장(29%), 기감(26%), 통합(24%), 합동(15%)순이었다.

노후 준비 신학의식도 전체 평균이 4.07점이었는데, 4개 교단 모두 미리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예장통합측(4.24)과 기장측(4.19)은 평균을 넘었으나, 예장합동측(3.92)과 기감(3.97)은 평균값 이하로 노후 준비 신학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단 은급제도는 가입자가 61%로 많았으나, 교단별로 기장측이 91%, 기감측이 86%, 통합측이 77%였으나 합동측은 단 11%만이 가입하고 88%는 미가입자였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가입자가 53%였는데, 교단별로는 기장측이 63%가 가입하여 가입자가 절반을 넘었으나, 기감측(46%), 통합측(42%), 합동측(36%)은 가입자가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를 밝힌 203명중에 미가입 사유를 살펴 본 결과, 경제적 어려움때문이 119명(58.6%), 교단 은급제도를 가입했기 때문에 이중가입할 수 없다가 37명(18.2%), 성직자 예외와 필요없음이 각각 13명(6.4%)씩이었고, 이어 신뢰성 결여(12명, 5.9%), 가입연령 지남(6명, 3.0%), 기타 몰랐다(2명), 개인연금 가입(1명)순 이었다.

한편 교차분석을 통해 본결과 응답자 450명중 국민연금와 교단 은급제도를 모두 가입한 목회자는 147명이었고, 국민연금과 교단 은급제도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도 110명이나 되었다.

〈표 5〉 교단별 목회자 단순 기술통계치

| 구분 | 단위 | 예장합동 | | 예장통합 | | 기장 | | 기감 | | 전체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경제적 준비 | 점 | 1.86 | .73 | 2.26 | .80 | 2.40 | .79 | 2.15 | .75 | 2.15 | .79 |
| 연령 | 세 | 51.68 | 8.03 | 49.78 | 8.41 | 53.15 | 7.86 | 52.81 | 9.84 | 52.05 | 8.50 |
| 학력 | | 2.03 | .46 | 2.28 | .50 | 2.18 | .57 | 2.29 | .55 | 2.18 | .53 |
| 월수입 | 만원/월 | 216.86 | 158.36 | 283.09 | 191.73 | 257.52 | 115.49 | 245.95 | 126.49 | 247.39 | 154.81 |
| 자녀교육비 | 만원/월 | 62.81 | 61.86 | 90.53 | 92.50 | 65.98 | 72.79 | 69.60 | 74.45 | 71.40 | 75.30 |
| 자녀수 | 명 | 2.43 | .87 | 2.16 | .90 | 2.12 | .73 | 2.19 | .76 | 2.21 | .81 |
| 청장년수 | 명 | 66.25 | 121.61 | 367.00 | 631.29 | 131.55 | 134.40 | 136.92 | 328.57 | 158.89 | 361.23 |
| 교회자립여부 | 더미 | .42 | .49 | .71 | .45 | .73 | .44 | .70 | .45 | .61 | .48 |
| 교회자체적립 | 더미 | .15 | .39 | .24 | .43 | .29 | .45 | .26 | .44 | .23 | .42 |
| 노후준비의식 | 점 | 3.92 | .54 | 4.24 | .51 | 4.19 | .51 | 3.97 | .63 | 4.07 | .56 |
| 교단은급가입 | 더미 | .11 | .32 | .77 | .42 | .86 | .34 | .92 | .27 | .61 | .48 |
| 국민연금가입 | 더미 | .36 | .48 | .42 | .49 | .63 | .48 | .46 | .50 | .46 | .49 |

## 2) 경제적 노후 준비 결정요인 분석

### (1) 상관관계 분석

경제적 노후 준비와 독립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먼저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면, 연령, 자녀수, 통합측, 기감측을 제외한 학력(.r=.247, p<.001), 총수입(.r=.452, p<.001), 자녀교육비(.r=.163, p<.01), 자녀교육비(.r=.163, p<.01), 기장측(.r=.177, p<.001), 교회자립여부(.r=.350, p<.001), 준비의식(.r=.171, p<.001), 교회자체적립(.r=.214, p<.001), 교단 은급제도(.r=.288, p<.001), 국민연금 가입(.r=.285, p<.001) 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총수입(.452)이었고, 국민연금 가입(.285), 학력(.247), 교회자립(.350), 교단은급가입(.288), 기장측(.177) 등도 비교적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요인들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다음에서 보일 종속 변수의 결정요인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독립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총수입과 자녀교육비의 상관계수(.r=.461, p<.001)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r의 값이 .6을 넘지 않아(이윤로, 2003) 다중공선성[5]의 문제가 없어 독립 변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과 자녀수(.r=.257, p<.001), 연령과 국민연금 가입(.r=.245, p<.001), 학력

과 수입(.r=.262, p<.001), 학력과 자녀교육비(.r=.220, p<.001), 학력과 교인수(.r=.266 p<.001), 총수입과 교회자립(.r=.233, p<.001), 총수입과 자녀교육비(.r=.461, p<.001), 총수입과 청장년수(.r=.235, p<.001), 총수입과 교회자립(.r=.386, p<.001), 총수입과 교단은급(.r=.220, p<.001), 통합측과 기장측(.r=-.306, p<.001), 통합과 기감측(.r=-.288, p<.001), 통합측과 청장년수(.r=.298, p<.001), 기장측과 기감측(.r=-.302, p<.001), 기장측과 교단은급(.r=.264, p<.001), 기감측과 교단 은급제도(.r=.330, p<.001), 청장년수와 교회자립(.r=.286, p<.001), 교회자체적립과 교회자립(.r=.230, p<.001), 교회자립과 교단은급 가입(.r=.345, p<.001) 등이었다.

〈표 6〉 4개 교단 전체 목회자 변수간 상관관계

| | 연령 | 학력 | 총수입 | 자녀교육비 | 자녀수 | 통합측 | 기장측 | 기감측 | 청장년수 | 교회자립 | 교회자체적립 | 노후준비의식 | 교단은급 | 국민연금 | 노후준비 |
|---|---|---|---|---|---|---|---|---|---|---|---|---|---|---|---|
| 연령 | 1 | | | | | | | | | | | | | | |
| 학력 | -.074 | 1 | | | | | | | | | | | | | |
| 총수입 | .207*** | .262*** | 1 | | | | | | | | | | | | |
| 자녀교육비 | -.033 | .220*** | .461*** | 1 | | | | | | | | | | | |
| 자녀수 | .257*** | .051 | .134** | .095* | 1 | | | | | | | | | | |
| 통합측 | -.091 | .087 | .128** | .134** | -.036 | 1 | | | | | | | | | |
| 기장측 | .091 | -.011 | .049 | -.040 | -.053 | -.306** | 1 | | | | | | | | |
| 기감측 | .055 | .107* | -.002 | -.011 | -.015 | -.288** | -.302** | 1 | | | | | | | |
| 청장년수 | -.114* | .266*** | .235*** | .172*** | -.017 | .298*** | -.052 | -.037 | 1 | | | | | | |
| 교회자립 | .127** | .233*** | .386*** | .104* | .054 | .081 | .110* | .105* | .286*** | 1 | | | | | |
| 교회자체적립 | .049 | .056 | .151** | .039 | .034 | .019 | .078 | .047 | .151*** | .230*** | 1 | | | | |
| 노후준비의식 | -.168** | .147** | .145** | .129** | -.053 | .162** | .115* | -.100* | .020 | .085 | .023 | 1 | | | |
| 교단은급 | .037 | .154** | .220*** | .073 | -.065 | .161** | .264*** | .330*** | .163** | .345*** | .203*** | .182*** | 1 | | |
| 국민연금 | .245*** | .087 | .186*** | .050 | -.021 | -.036 | .186*** | .006 | -.088 | .178*** | .109* | .143** | .164*** | 1 | |
| 노후준비 | .084 | .247*** | .452*** | .163** | .034 | .077 | .177*** | .008 | .148** | .350*** | .214*** | .171*** | .288*** | .285*** | 1 |

*p<.05 **<.01 ***<.001

5) 다중공선성은 독립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으로, 회귀식에 투입되는 독립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각 독립 변수의 설명변량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회귀분석에 앞서 반드시 다중공선성을 확인해야 하는데(양병화, 2006: 송지준, 2008), 변수간의 상관 계수(.r)나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로 확인하는데, 그 값은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 (2) 경제적 노후 준비 결정요인 분석

본문에서는 종속 변수인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 변수들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회적 요인, 교단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요인별로 순서대로 4단계에 걸쳐 분석하였는데 이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요인을 1단계로 투입한 모델1(F=17.042, p<.001)은 적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요인중 최종학력(β=.129, p<.01)과 총수입(β=.404, p<.001)이 경제적 노후 준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총수입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 활동을 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령, 자녀교육비, 자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예장합동측을 기준으로 예장통합측, 기장측, 기감측을 더미 처리하여 투입한 결과, 합동측보다 기장측(β=.249, p<.001)과 통합측(β=.134, p<.05)이 정(+)의 방향으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변수를 투입한 후, 2단계로 교회적 요인인 교인수, 교회자립, 교회자체적립 여부를 투입한 결과, 모델2(F=14.379, p<.001)은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3.1%P 증가한 28.6%였다. 교회적 요인중에서는 교회자립(β=.135, p<.01)과 교회자체적립(β=.117, p<.01)이 영향을 미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보다, 교회자체적으로 은급비를 적립하는 교회가 미적립하는 교회 목회자보다 사적 노후준비도 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모델2에 3단계로 교단적 요인인 노후 준비 신학의식, 교단 은급제도 가입여부를 투입한 결과, 모델3(F=12.304, p<.001)은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0.3%P 증가한 28.9%였으나 교단적 요인(노후준비 신학의식, 교단 은급제도 가입여부)은 모두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 모델4에서는 모델3에 제도적 요인인 국민연금 가입여부요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식은 적합하였으며(F=12.270, p<.001), 설명력은 1.5%p 늘어난 30.5%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β=.135, p<.01)가 노후 준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독립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미가입자보다 사적 준비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모델들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학력과 총수입, 교회자립 여부, 교회자체적립여부는 모델4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쳤다. 또한 4개 교단중에서는 기장측(β=.164, p<.001) 목회자가 합동측 목회자보다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개 교단 전체 목회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미자립 교회보다 자립 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은급비를 적립하는 교회가 미적립하는 교회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보다 가입자가, 예장합동측보다 기장측 목회자가 경제적 노후 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4개 교단 전체 목회자 경제적 준비 회귀분석 결과[6](N=407)

| 모형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
| |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상수) | 1.080 | | 3.932*** | 1.115 | | 4.123*** | .767 | | 1.966 | .940 | | 2.405 |
| | 연령 | .000 | -.004 | -.091 | -.001 | -.015 | -.316 | .000 | -.003 | -.056 | -.003 | -.035 | -.717 |
| | 학력 | .196 | .196 | 2.795** | .175 | .115 | 2.473* | .169 | .111 | 2.386* | .159 | .104 | 2.255* |
| | 총수입 | .002 | .404 | 7.809*** | .002 | .343 | 6.368*** | .002 | .335 | 6.199*** | .002 | .328 | 6.109*** |
| | 자녀교육비 | -.001 | -.062 | -1.252 | .000 | -.043 | -.881 | .000 | -.046 | -.936 | -.001 | -.049 | -1.005 |
| | 자녀수 | -.009 | -.009 | -.194 | -.012 | -.012 | -.267 | -.011 | -.011 | -.243 | .001 | .001 | .024 |
| | 통합측 | .263 | .134 | 2.631* | .217 | .111 | 2.123* | .165 | .084 | 1.380 | .164 | .084 | 1.389 |
| | 기장측 | .464 | .249 | 4.813*** | .384 | .206 | 4.017*** | .333 | .178 | 2.796** | .305 | .164 | 2.582** |
| | 기감측 | .199 | .105 | 2.049 | .129 | .068 | 1.334 | .092 | .048 | .743 | .094 | .050 | .770 |
| 교회적요인 | 청장년수 | | | | -7.5E-005 | -.035 | -.720 | -6.0E-005 | -.028 | -.571 | -1.9E-005 | -.009 | -.178 |
| | 교회자립 | | | | .222 | .135 | 2.689** | .209 | .127 | 2.479* | .188 | .114 | 2.244* |
| | 교회자체적립 | | | | .219 | .117 | 2.621** | .217 | .116 | 2.578* | .202 | .107 | 2.411* |
| 교단적요인 | 노후준비의식 | | | | | | | .078 | .055 | 1.210 | .057 | .041 | .893 |
| | 교단은급 | | | | | | | .050 | .030 | .471 | .036 | .022 | .344 |
| 제도적요인 | 국민연금 | | | | | | | | | | .216 | .135 | 2.950** |
| $R^2$ | | .255 | | | .286 | | | .289 | | | .305 | | |
| F | | 17.042*** | | | 14.379*** | | | 12.304*** | | | 12.270*** | | |
| $R^2$변화량 | | .255 | | | .031 | | | .003 | | | .015 | | |

*p<.05 **<.01 ***<.001

## 5. 결 론

본 연구는 개신교내의 은급제도를 둔 4개 주요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기감) 교단간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조사로서 교단 은급제도 운영방식을 달리하는 4개 교단(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기감) 목회자 4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들의 노후 준비 신학의식은 최하 1점, 최고 5점 중에 평균 4.07로 목회자들이 노후를 준비하거나 적금통장을 갖는 것이 죄가 아니며, 미리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간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무소유가 미덕이며, 노후를 준비하거나 보험이나 적금통장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노후준비는 하나님과 교회에 맡기고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전통적인 생각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제도가 도입되고, 갑작스런 사망이

6)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처리한 변수 ①통합측: 통합측 1, 비통합측 0, ②기장측: 기장측 1, 비기장측 0, ③기감측: 기감측 1, 비기감측 0 ④교회자립: 자립 1, 미자립 0 ⑤교회자체적립: 적립 1, 미적립 0, ⑥교단은급 가입: 가입 1, 미가입 0, ⑦국민연금 가입: 가입 1, 미가입 0

나 사고로 빈곤이나 위험의 사각지대에 처한 선배나 동료 목회자들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목회자들의 경제적 노후 준비활동 수준은 최하 1점, 최고 5점 중에 평균 2.15점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는 국민연금과 교단 은급제도 가입을 제외한 사적인 경제적 준비활동만을 의미하기에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민연금이나 교단 은급제도, 개교회의 노후 준비 대책을 노후 준비활동에 포함시킨다면 경제준비 수준은 다소 올라갈 것이다.

셋째, 교단 은급제도에 대한 교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무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교단(예장통합, 기장, 기감)은 75%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지만, 임의가입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장합동측은 11.5%로 매우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여부도 미가입자(53.3%)가 가입자(46.2%)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장측만이 가입자(61.8%)가 미가입자수(36.4%) 보다 더 많았다. 이는 2007년말 현재 15세이상 60세미만의 전체 대상자중 납부예외자수(28%)보다 많다(마이데일리, 2008. 10. 28일자).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방식은 지역가입방식(82.3%)이, 비용부담은 전액 개인부담(74.9%)이 많았고, 미가입한 사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58.8%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가 경제적 어려움과 교단 은급제도 가입에 따른 이중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4개 교단 전체목회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과 총수입과 교회자립 여부, 교회자체적립 여부,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여부 변수였다. 이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선 학력이 높을수록, 총수입이 많을수록 경제적 노후 준비가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Beck, 1984; McPherson and Kilty, 1989; 서전·박혜인, 1992; 김인숙, 2004; 김문을, 2002; 박창제, 2008)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교회가 안정되고 총수입이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노후 준비의식도 높을 것이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수입은 또한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는데, 이는 총수입은 생계유지의 밑바탕이 되고 수입이 늘면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량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비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Mckenna(1985), Kilty & Bihling(1986), 김성숙·박운아(1992), 이지은(199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연령, 자녀교육비, 자녀수는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교회적 요인중에서는 자립 교회가 미자립 교회보다, 교회적립을 하지않는 목회자보다 교회자체적으로 적립하는 목회자가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교회자립은 외부 지원없이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회 자립은 교회재정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고 이에 목회자의 노후 준비에도 신경쓰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은급비를 적립한다는 것은 교회가 재정적 여유가 있어 적립을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 사적 준비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인수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단적 요인(노후준비 신학의식, 교단 은급제도 가입여부)은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제도적 요인(국민연금 가입여부)은 경제적 노후 준비활동에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사적 경제적 노후 준비활동 수준도 높았다. 이는 Mckenna(1985)와 윤경선(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좀 더 노후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4개 교단중 기장측 목회자들이 예장합동측보다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측은 4개 교단 중 교회자립(70%)도 가장 높고, 교단 은급제도에도 많이 가입한 교단중의 하나이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과반수를 넘는 유일한 교단이었다. 교단 은급제도 가입률도 높고, 임의가입방식인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노후 준비도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합동측은 미자립 교회(56.8%)가 절반을 넘고, 교단은급 가입률(11.5%)과 국민연금 가입률(36%)이 모두 낮은 것은 공적 연금에도 참여하지 못하지만 사적 노후 준비도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연구결과, 첫째,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수입으로, 총수입은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교단 은급제도와 국민연금, 사적 준비와도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국 수입이 많은 목회자는 교단은급제도와 국민연금 및 사적 준비까지 모두 준비하지만 수입이 적은 목회자는 사적준비는 물론 공적준비도 못하는 노후준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 목회자의 소득격차는 노후 준비의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총수입의 문제는 개교회나 개별 목회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교단은 교단내 목회자들의 소득과 노후 준비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교회간 혹은 노회간 자매결연[7]이나 최저생계비(혹은 최저생활비) 제도[8]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교단이 시행중인 현행 은급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예장합동측은 물론이고 강제가입방식을 채택하여 미가입자에게 회원권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감측과 기장측도 교단은급제도 미가입자가 각각 8%, 14%로 나타났다. 이규현(2007)은 교단은급제도를 의무가입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가입하는 목회자는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국가가 의무가입시키는 국민연금제도에도 실직이나 휴직, 경제적 곤란상의 문제로 납부예외자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정화면, 2004; 마이데일리, 2008.10.24)[9].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 개인의 2자부담방식에서 교단과 교회, 목회자 개인 등의 3자 부담방식[10]으로 바꾸어가는 것과, 현행 기여형 갹출연금제와 아울러 무기여형 기초연금제도[11]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원래 국민연금은 국민에 대한

---

7) 예장합동 울산노회와 울산남노회는 제주교회 살리기의 일환으로 2007년말 제주노회 북시찰과 남시찰 소속교회와 각각 자매결연하여 매달 10-1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국민일보, 2008.3.3일자).

8) 기장측은 1983년부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 장로는 총회와 노회의 선거권, 총대권,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의무 참여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재원은 지교회의 목회자 십일조의 50%, 총회산하기관 근무자 봉급의 5%를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하고, 이렇게 모아진 재원으로 2007년 2월 현재 432개 교회에 매월 총 98,39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기장총회 홈피참조, 크리스천투데이 2006.11.27).

9)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약 1,827만명이고, 이중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약 511만명(28%)으로 2002년 425만명에서 86만명(20.1%)이 증가했다.

10) 교회와 목회자 개인의 2자부담 방식을 택하는 다른 교단과 달리, 예장합동측은 총회의 1년예산의 1%, 유지재단 1년매출액의 1%를 납부하도록 하는 3자부담 방식을 택하고 있다.

11) 예장통합측은 교단은급(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은퇴목회자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월 20-30만원씩 차등지급하기로 하여 올 93회기동안 시범실시를 거쳐 94회기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국민일보, 2008.10.11일자).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수단이지만, 국가는 목회자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공적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목회자도 '일한다'(오스 기니스, 2000)는 면에서 근로자이고 교회 또한 세상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이므로, 목회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되, 지역가입자로 하면 재정부담이 크므로 개교회가 아닌 교단(혹은 노회, 지방회 등)이 가입자가 되는 직장가입방식[12]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교단 은급(연금)제도 때문에 이중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의 노후소득보장은 정부, 기업, 개인 단위의 3층 보장방식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제도와 교단 은급제도를 노후 준비를 보완하는 제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단과 목회자편에서도 국민연금을 노후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적극가입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국민연금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고[13], 관심도 거의 없어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몰라서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교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표집과정에서 교단별 목회자 규모가 다름에도 400명씩 동일하게 표본을 배정한 것이나, 우편조사의 특성상 응답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은 전교단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교단들은 교단은급제도를 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목회자들로서 군소교단의 목회자들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전체 목회자들의 노후준비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변수 설정에서 공적 노후준비 수단이 개인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목회자의 담임목사 여부 등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목회자가 국민연금 적용제외 내지 납부예외자에 해당되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기독교사회복지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강유진. 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30, 40, 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계선자. 1988. "기혼여성의 노후생활 계획행동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7.

권균한. 2001. "은퇴목회자의 사회복지, 선교적 활동욕구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기원. 2001.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공적-사적연금 선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문을. 2002.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 준비와 스트레스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우. 2005. "목회자 노후소득보장 만족도 연구". 천안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카톨릭교회(천주교회)는 국민연금에 교구별로 사업장 가입을 하여, 서울교구와 인천교구는 지난 2000년부터 소속 신부와 수녀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13) 본 조사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204명중 신뢰성 결여로 미가입한 경우도 12명(5.9%)이었다.

김선희. 1989.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숙・박운아. 1992.“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 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2), pp.45-48.
김성훈. 2000. “은퇴목사의 경제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채. 2007. “중년층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인숙. 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청수. 2002. 「목회의 적 목사의 적」. 도서출판 누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사회봉사부. 2007. 「2007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 실태조사연구」.
박종일. 1998. “은퇴목회자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선. 2004. “사회복지사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창제. 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275-297.
배계희. 1988. “중년기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현정. 2002. “원불교 교역자의 노후복지 대책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전・박혜인. 1992. “중년기 가족의 부양행동 및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18: 143-166
서정창. 2005. “침례교 목회자의 노후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병덕. 2008. “목회자의 은퇴이후 준비”. 기독신문사노조 주최 목회자 노후대책 세미나자료집
손상국. 2002. “불교조계종 승려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지준. 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신하연. 1997. “중년기 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 준비수준과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하연・여정성. 1997. “중년기 소비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분석법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오스 기니스, 홍병룡역. 2000. 『소명』.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ivp).
윤경선. 2004. “중년층 노동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활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규현. 2007. “목회자 노후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기성. 2004.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규. 2004. “목회가 부담스러워질때”. 『목회와 신학』 182: 50-56.
이연숙. 1998. “가정관리에서의 생활표준: 진단과 과제”.『한국가족자원경영학』 2(2)
이용하. 2003.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정책방향”. 『연금포럼』 12
이윤로. 2003.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학지사
이지은. 1999.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행숙. 1996. “주부의 노후생활준비의식, 행동 및 경제대책에 관한 연구-서울시에 거주하는 30,40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장순. 1990. “도시인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의식조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훈식. 1985. “교역자의 복지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봉화. 2004. “불교승려 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화면. 2004.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축소방안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최성재. 1992. 『노인복지학』.서울대출판부.

통계청. 2007. “2007 고령자통계”.

Beck, S.H. 1984. "Retirement Rreparation Programs Differentials in Opportunities and Use“ . *Journal of Gerontology* 39: 596-602.

Hodges, Linda.. 2004. "The Relationship of Migr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in a Cohort of Middle-Aged Adul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Kilty, K. M. & Bihling, J. H. 1986.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Professional Workers”, *The Gerontologist* 26(5) :525-530

Mckenna, J. S. 1985. Planning for Retirement Security: A Study of Women in the Middle Years, Dissertation of Oklahoma University.

McPherson, B., and N. Guppuy. 1979.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gy* 34: 254-263

Montalto, Li, J. and L V Geistfeld. 1996. "Determinants of Financial Adequacy for Retirement". FCP 7: 39-48

Richardson, V., and K. M. Kilth. 1989.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Black Prefessionals." *The Gerontolgist* 29(1) : 32-37.

# Determinants of Pastors'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Chang-Kook, Song**
(Pastor of Doore Church,
Part-time Lecturer a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is intended to figure out determinants affecting the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of pastors from major four protestant associations having a church ministerial pension system: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GA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CK),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PROK), and the Korean Methodist Church (KMC). Thereby, it conducted a survey to 452 pastors from the four religious associations in Korea. The followings sum 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it was shown that the conventional idea that there is no need for pastors to prepare for their old age or their preparations for old age imply disbelief had been diminished. Second, there were few pastors who had made economic preparations for their old age privately. Third, associations adopting a compulsory church ministerial pension system were PCK, PROK, and KMC indicating a high occupation of more than 75% whereas GAPCK with an optional system showed a very low percentage of 11.5%. Fourth, with regard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associations except for PROK (61.8%) had more non-enrolled pastors (53.3%), and they responded economic difficulty as the biggest reason for the unenrollment. Fourth, determinants affecting their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were academic career, total income, church independency, church reserving, and national pension enrollment. Fifth, among the pastors from the four associations, the ones of PROK prepared for their old age best in consideration of GAPC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paper, the most critical determinant affecting pastors'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was total income. Pastors with higher income can make church ministerial pension, national pension, and private preparations while the ones with lower income cannot afford for public as well as private preparations; that is, there exists a polarization phenomenon in pastors' economic preparations for old 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devices to

narrow the income gap between pastors in religious associations. Second, even in the associations having a compulsory church ministerial pension system, many pastors were not insured, so it is needed to reform or improve the pension system. Third, it is also required to bette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change the recognition on it.

Key words: pastor,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ministerial pension system, national pension system, private preparation, The Korean Methodist Church(KMC),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PRO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PCK),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GAPCK),

〔논문 접수일 : 09. 03. 25 심사일: 09. 04. 16 게재 확정일 : 09. 05. 14〕